

## '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사항

### ① 신고안내문 발송

- (신고대상 안내)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.24.(금)부터 5.15.(월)까지 안내문(모바일 또는 서면)을 발송 예정
  - 모든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\*하고, 모바일 발송 실패자와 모두채움 안내자 중 미열람자에게는 서면 안내문 발송(기신고자 제외) 예정
    - \* 카카오, 네이버, KT를 통해 납세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
  -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.1.(금)~5.5.(화) 모바일 안내문 순차 발송\*
    - \* 홈택스·손택스에서 5.1.(금)부터 확인 가능
- (전자신고 운영) 홈택스·손택스·ARS 전화(☎ 1544-9944) 신고 가능하며, 5월은 운영 시간\*을 오전 1시까지 연장(ARS는 24시까지)함
  - \* 5.1.~5.31.(5.10. 제외) : 매일 06:00 ~ 다음날 01:00
  - 다만 5.11.(원천세 신고종료일)과 종합소득세 마지막 날인 6.1.(신고 종료일)은 06:00 ~ 24:00시 까지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람

### ② 성실신고 사전안내

- (성실신고 사전안내) 내·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제공 예정임
  - 사전안내 대상자 에게 「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」 안내문을 5.6.(수)부터 모바일로 발송(모바일 발송 실패자는 서면안내문 발송)예정
  - 「신고도움 서비스」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함
  - 세무대리인(기장·신고대리)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 조회 가능하오니 반드시 열람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

### 3 세정지원

- (납부기한 직권연장) ①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사업자, ②유가민감 업종 사업자, ③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의 납부기한을 8.31.(월)까지 직권 연장\*(신고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) 예정

\*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(2개월 연장): '26. 6. 30.(화) → '26. 8. 31.(월)

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 5. 1. ~ 8. 31. 사이에 언제든지 납부 가능

-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, 홈택스·손택스 「신고도움 서비스」에서 직권연장 여부 확인이 가능하오니 납세자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람
- 영세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 부탁 드림

대 상	요 건(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)
① '26년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일반과세자) '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, '25.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감소한 사업자*</li> <li>* (업종) 제조, 건설, 도매, 소매, 음식, 숙박, 운수, 서비스업</li> <li>▶ (간이과세자) 사업자 전체(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)</li> </ul> <p>※ 단, 부동산임대업, 전문직사업자(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) 제외</p>
② 유가민감 업종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석유)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</li> </ul>
③ 티몬·위메프·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	

### 4 이번 신고 변경 사항

####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및 정교화

- (모두채움 대상 확대)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누락한 근로 소득자와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인적용역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임

- (모두채움 정교화) 대법원 자료 및 간소화 자료 등 활용하여 지급명세서상 잘못된 공제 또는 과다공제분은 제외하고, 공제 누락분은 추가공제 반영할 예정임

### ARS 신고 절차 간소화

- (간편 신고) 모두채움 대상자 ARS 신고 시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, 환급세액만 확인하면 신고 종결되도록 개선하였음
  - \* (기존) ARS 전화 → 연락처 입력 → 환급금액 확인 → 환급계좌 입력 → 신고서 제출
  - (개선) ARS 전화 → 환급금액, 환급계좌, 연락처 확인 → 신고서 제출

### 정보 제공 확대

- (신고도움서비스)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별 맞춤형 공제·감면항목을 제공하는 「절세혜택 도움자료」란을 신설 하였으므로 확인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람
- (조사결과 제공)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「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」으로 제공하여 동일한 신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오니 확인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람

###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

- (환급금 조기 지급) 수정 없이 제출한 모두채움 신고는 1차 환급 결의서 구축하여 조기 지급하고, 이외 환급신고 6월말까지 신속 지급할 예정임

## 6 세무대리인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

- (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자진신고)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
  - '26.6.30.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오니
  - 사업자대출 관련 이자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「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」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납세자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 하여 주시기 바람
- (대량일괄자료 전송 자제) 신고기간 중 시스템 과부하 방지 등 원활한 홈택스 운영을 위해 대량일괄자료 중복 전송 등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림
- (사전안내자료 확인) 수입납세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 시 「신고도움 서비스」의 “개인별 유의사항”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
  - ※ 사전안내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「신고 내용 확인」 실시 예정임
- (신고대리 적극 지원) 기준경비율 대상자, 3주택 이상자, 금융소득자 등은 신고도움창구 이용 제외되므로 신고대리 요청 시 적극 수입 요청 바람
- (금융소득자료 출력 안내) 금융소득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납세자가 금융소득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·출력\*하도록 안내 바람
  - \* (2천만원 초과) 홈택스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도움자료조회(금융소득조회)
  - (1~2천만원) 홈택스 로그인 → 나의 홈택스 → 소득·연말정산 → 금융소득 조회(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)

**[참고] '25귀속 주요 세법개정 사항**

**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(소법§59의2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세액공제 <input type="radio"/> (공제금액) - (첫째) 15만원 - (둘째) 20만원 - (셋째 이후) 30만원/인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금액 확대 <input type="radio"/> (공제금액) - (첫째) 25만원 - (둘째) 30만원 - (셋째 이후) 40만원/인

〈개정취지〉 출산·양육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5. 1. 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**②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(소령§107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의 범위 <input type="radio"/>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<input type="radio"/> 장애인증명서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의 범위 명확화 <input type="radio"/> 증증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·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* *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§21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

〈개정취지〉 납세자 편의 제고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5.2.28.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

**③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(소령§62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감가상각 무형자산 범위 <input type="radio"/> 영업권, 특허권, 광업권, 유료도로관리권, 개발비,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 확대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-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 (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)

**<개정취지>**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

**<적용시기 및 적용례>** 2025.2.28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

**④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(소법§12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<input type="radio"/> (한도) 월 2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 폐지 <input type="radio"/> 전액 비과세(한도 없음)

**<개정취지>** 저출생 해소

**<적용시기 및 적용례>** 2024.1.1.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수당부터 적용

**⑤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(소법§50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<input type="radio"/> (대상) 거주자의 직계비속 <input type="radio"/> (나이요건) 20세 이하	<input type="checkbox"/> 나이요건 명확화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20세 이하(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)

**<개정취지>** 조문 정비

**⑥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(소법§17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가산소득(Gross-up) 적용 제외되는 배당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,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<input type="checkbox"/> 3% 재평가적립금(합병·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)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

**<개정취지>**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
**<적용시기 및 적용례>** 20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

**⑦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(조특법§19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- (공제율) 15% 공제 - (적용기한) 2024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- 15% → 10% - 2027.12.31.

**<개정취지>**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

**<적용시기 및 적용례>** 20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**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(조특령§27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<input type="radio"/> 운수 및 창고업 <제 외> <input type="radio"/> 정보통신업(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제외) <제 외> <input type="radio"/>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<제 외> <input type="radio"/> 부동산업 <제 외>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업종 정비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- 「관세사법」 따른 통관업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-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- 수의업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- 부동산 임대업

<개정취지> 감면 대상 업종 정비

<적용시기 및 적용례> 2025.2.28.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

**9 국가전략기술 등 R&D 세액공제·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0, 조특법§24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R&D비용 세액공제 <input type="radio"/> (대상) 국가전략기술(7개 분야) 및 신성장·원천기술(14개 분야) R&D비용 <input type="radio"/> (적용기한) 2024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2029.12.31. - 반도체 분야는 2031.12.31.
<input type="checkbox"/> 통합투자세액공제 <input type="radio"/> (대상) 국가전략기술(7개 분야) 사업화시설 투자 <input type="radio"/> (적용기한) 2024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2029.12.31.

<개정취지>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

**10 R&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명확화(조특령 별표6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R&D 세액공제 대상 <input type="radio"/> 인건비 <input type="radio"/>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업종 정비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+ 장기요양보험

**<개정취지>**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인건비 범위 명확화

**1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실계(조특법§19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<input type="radio"/>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- (공제율) 15% 공제 - (적용기한) 2024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등 <input type="radio"/>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- 15% → 10% - 2027.12.31.

**<개정취지>**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

**<적용시기 및 적용례>** 20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**12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(조특법§29의8, 조특법§30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<input type="radio"/> (성별) 여성 <input type="radio"/> (업종)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*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<input type="radio"/> (퇴직사유) -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<삭 제> <input type="radio"/> 1년 이상 근무 (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) <input type="radio"/> 퇴직사유 추가 - (좌 동) - 가족돌봄

**<개정취지>**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

**<적용시기 및 적용례>**

(통합고용세액공제) 20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 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중기취업자감면) 2025.1.1.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

**13 중복지원 배제 개편(조특법§127)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<input type="radio"/>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 증대 중복배제	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복배제 확대 <input type="radio"/>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복배제

**<개정취지>** 세제혜택 중복 방지를 통한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

**<적용시기 및 적용례>** 20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